

 보건복지부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h2 style="margin: 0; color: red;">9월 19(목) 조간 (9.18. 12:00 이후 보도)</h2>		
		배포일 2019. 9. 18. / (총 10 매)		
보육정책과 (지침, 법령 개정) (전자출결시스템)	과장	현수엽	전화	044-202-3540
	담당자	황호평 김선도		044-202-3541 044-202-3547
보육사업기획과 (보육료, 연장보육료)	과장	이윤신		044-202-3560
	담당자	민차영		044-202-3562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운영)	과장	김우중		044-202-3580
	담당자	임세희		044-202-3582
공공보육팀 (보육교사)	팀장	백경순		044-202-3552
	담당자	황신자		044-202-3556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19~10.28) -

- ◇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 ◇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어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오후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여 아이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설치되며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시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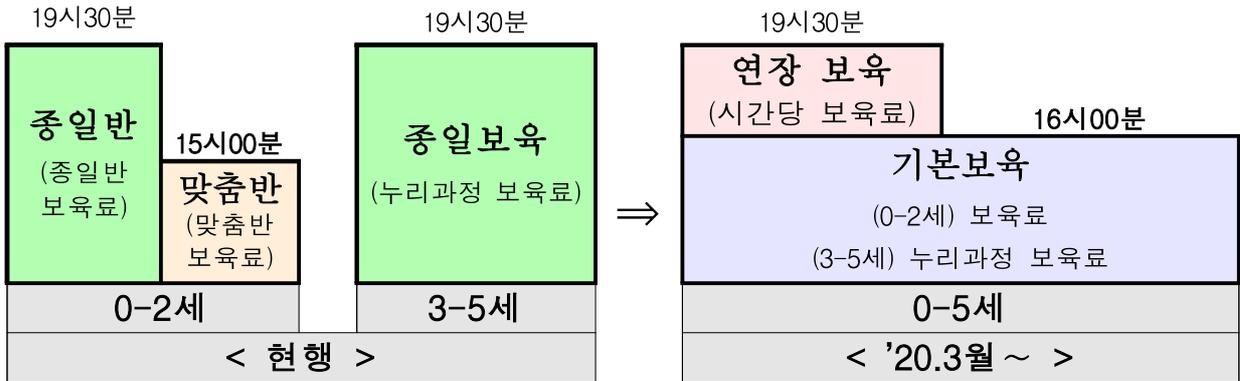
○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년 3월)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간>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 *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2000원
-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반 정원>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원칙	3명	5명	1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0명	2명	5명

<보육료>

-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는다.
-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단위 : 원, 시간당)

구 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 * 검증된 민간 자동출결시스템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전송 ⇨ 보육료 생성
-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9월 25일(수)까지 모집*한다.

* 신청 제출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참여 의향서」 제출(☎ 02-6360-4655)
9.25일까지 1차 모집하고 이후에도 시범사업 기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 <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개정('19.4) 내용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

붙임 1

영유아보육법 개정('19.4) 내용

- “보육시간 기본·연장 구분 + 연장보육 교사 별도배치”를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19.4월)
 -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 +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임의 규정으로 구체적 운영기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붙임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주요개정사항	시행규칙	지침(「보육사업 안내」)
보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시간) 7시간 · (연장보육시간) 기본보육시간 종료 이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시간) 7시간으로 9시부터 16시까지 · (연장보육시간) 기본보육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보육시간으로 운영
연장보육반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아반(0~2세) 5명당 교사 1명, 유아반(3~5세) 15명당 교사 1명 장애아, 만 1세 미만 3명당 1명 배치가 원칙 · (반편성 원칙) 반편성은 같은 연령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혼합반 편성, 혼합반 편성 기준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반 구성 및 예외) 연장보육반 구성 원칙 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연장보육수요를 감안해 영아 2명, 유아 5명까지 추가 가능 - 놓여촌은 영아 7명, 유아 19명 이내로 정할 수 있음 · (연장반 대상) 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기존 종일반 이용 가정과 동일, 3~5세는 별도 요건 없음
연장교사 배치 및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보육반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동 출결시스템에 의한 아동출결 관리, ② 연장반 정원 80% 이상 충족 ※ 배치 후 기준 미달 시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 · (근무시간) 평일 4시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보조교사와 겸직 가능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사항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자동출결시스템으로 하원시간을 확인하여 시스템에서 산출된 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급 ※ 시간당보육료 (단위 : 원) <table border="1" data-bbox="997 548 1423 667"> <tr> <th>구분</th> <th>0세반 장애아반</th> <th>영아반</th> <th>유아반</th> </tr> <tr> <td>단가</td> <td>3,000</td> <td>2,000</td> <td>1,000</td> </tr> </table>	구분	0세반 장애아반	영아반	유아반	단가	3,000	2,000	1,000
구분	0세반 장애아반	영아반	유아반							
단가	3,000	2,000	1,000							
<p>전자출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반 구성 및 전자출결) 연장보육반 구성 시 전자출결 시스템 구축 및 사용 의무화 · (전자출석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반 구성 및 전자출결) 연장보육반 구성 시 전자출결 시스템 구축 및 사용 의무화 - 미설치 시 연장보육료는 시스템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급할 수 없으며, 연장보육반 교사 인건비 지원 제외 								
<p>기타 용어 정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리) 시간연장형 보육→기타 연장 보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 종일→ 기본, 연장 변경 등 용어, 명칭, 서식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신규 대조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p>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과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p>	<p>어린이집 운영기준, 보육시간시간 등 규정</p>
<p>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1~3. (생략)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	<p>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1~3. (현행과 같음) 4. 기타 연장 보육: 별표 8 제2호다목1)에서 정한 주 6일, 하루 12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	<p>시간연장보육 명칭 변경</p>

<p>[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p> <p>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생략) 나. (생략) 1) ~ 7) (생략) 8) <신설></p> <p>다.~사. (생략)</p> <p>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생략)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p>	<p>[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p> <p>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연장보육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 만 3세 이상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아는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u></p> <p>다.~사. (현행과 같음)</p> <p>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현행과 같음)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u>연장보육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u>)</p>	<p>연장보육반 교사 배치 기준 및 근무시간 신설</p>
<p>[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p> <p>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p> <p><신설></p>	<p>[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과 내용</p> <p>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2) (현행과 같음)</p> <p>1) <u>어린이집의 반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연령을 혼합하여 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연령 혼합반 편성 기준 등 반 편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p> <p>3) <u>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에 따라 각각의 반을 구성 할 수 있다.</u></p>	<p>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 규정 및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규정(전자출석부 사용)</p>

<p><신설></p> <p><신설></p> <p>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p> <p>1) (생략) 2) <u>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u></p>	<p>4) 기본보육시간은 7시간으로 하고 <u>연장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종료 이후의 시간으로 한다. 그 밖에 보육시간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p> <p>5) <u>연장보육반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에 대한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아. 장부 등의 비치 ----- ----- ----- ---있다. 단, 출석부의 경우 <u>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하여야 한다.</u> -----</p> <p>1) (현행과 같음) 2) <u>어린이집 운영일지</u></p>	
<p>[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p> <p>1. 일반기준 마. ----- 취약보육(영아·장애아 ·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 중---</p>	<p>[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p> <p>1. 일반기준 마. ----- 취약보육(영아·장애아 · 다문화아동· 기타 연장 보육) 중 ---</p>	<p>시간연장보육 명칭 변경</p>